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7 선고 2020가단858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변론 종결2020. 12. 23.

판결 선고2021. 1. 2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는 137,757,919원 및 그 중 24,843,707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 D, E, F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피고 D는 37,570,341원 및 그 중 6,775,556원에 대하여, 피고 E, 피고 F은 각 25,046,894원 및 그 중 각 4,517,037원에 대하여,

다. 피고 G, I는 소외 망 J(K생, 남자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각 45,919,306원 및 그 중 각 8,281,235원에 대하여,

라. 피고 H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45,919,306원 및 그 중 8,281,235원에

대하여,

각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C, D, E, H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피고 F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피고 G, I에 대한 청구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J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위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, 상속의 한정승인은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, 법원으로서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,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,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. 따라서 위 피고들의 청구 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판사최희준

별지